

#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10
----------	-------

제출년월일 : 2024. 2. 21 .  
발 의 자 : 박은정 의원 등 12 명

### 1. 제안이유

-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안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 법제처 법령안 입안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상위법령 불부합과 자구·체계 등을 정비하여 입법체계에 맞추어 조례의 적합성을 제고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개정

현 행	개 정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응급장비 설치권장 대상(안 제6조제2호)
  - 500세대 이하 → 500세대 미만(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 보육기관 → 사회복지시설(현실에 맞도록 개정)
- 응급장비의 관리(안 제7조)
  - 반기별 점검→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 심폐소생술 교육(안 제8조)
  -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시간을 최소 2년마다 2시간으로 개정(경기도 지침 반영)
  - 우선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1
4. 현행조례 : 붙임 2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3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7. 부서검토의견 : 붙임 5
8. 조례안 예고결과 : 의견없음
-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2. 15. ~ 2024. 2. 20. (5일간)

## 【붙임 1】 전부개정조례안

#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증증 등)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발생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시장은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의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3. 관내 어린이집 · 학원 · 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4. 안산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시장은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용 책자를 제작 · 배포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및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8)

## 【불임 2】 현행조례

#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6조에 따른 응급의료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7.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개정 2020.10.7. >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증증 등)를 말한다.<신설 2020.10.7. >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전 2020.10.7.><개정 2020.10.7. >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신설 2014.11.25.><제4호에서 이전>

**제3조(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10.7. >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0.7.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0.10.7. >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0.7. >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7. >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7. >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7. >

1. 설치의무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개정 2014.11.25., 2020.10.7. >

2.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이하 공동주택, 보육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개정 2020.10.7.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장비를 설치한 설치권장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반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0.7.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0.10.7.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3. 관내 어린이집 · 학원 · 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항신설 2020.10.7.]

③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전 2020.10.7. >

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전 2020.10.7. >